

	<h2 style="margin: 0;">대학 자체평가 규칙</h2>		규정번호	3-1-26
			제정일자	2010.05.01
			개정일자	2013.06.17
			개정번호	Ver.6
			총페이지	5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, 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,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및 본 대학교 학칙 제69조에 따라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의 대학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용어의 정의)** “자체평가”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.

**제3조 (평가원칙)**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**제4조 (평가영역)**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·연구영역
2. 조직·운영영역
3. 시설·설비영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**제5조 (항목별 평가)**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 등급은 별표에 의한다.

**제6조 (평가지기)** 평가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평가지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 2 장 평가기구

**제7조 (전담부서)**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한 평가 전담부서는 기획처로 한다.

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업무총괄
2. 자체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에 관한 업무
3. 자체평가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

- 4.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반영
- 5. 자체평가 역량 향상

**제8조 (자체평가위원회)**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기획처장, 교학처장, 산학협력처장, 사무처장, 교무부처장, 학생부처장, 종합정보지원실장으로 구성하며 기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전임교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<개정 2010. 08. 12>

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대학자체평가 심사
- 2. 대학자체평가 심사서 작성
- 3. 평가위원회운영

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삭제<개정 2010. 08. 12>

**제9조 (회의록)**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10조 (간사)**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11조 (실무위원회)** ①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 및 정성평가 자료 작성을 위하여 자체평가 실무위원회(이하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0. 08. 12>

② 실무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<조 신설 2010. 08. 12>

③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<조 신설 2010. 08. 12>

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조 신설 2010. 08. 12><개정 2013. 06. 17>

- 1. 대학자체평가 계획 수립
- 2. 대학자체평가 지표 개발
- 3. 대학자체평가 정성평가 자료 작성
- 4. 실무위원회운영
- 5. 기타 자체평가와 관련된 사항
- 6. 대학자체평가 지표의 관리 및 평가<조 신설 2013. 06. 17>

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조 신설 2010. 08. 12>

### 제 3 장 평가방법 및 절차

**제12조 (평가계획수립)** 기획처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평가 실시 2개월 전에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부(과)에 통지한다.

**제13조 (평가자료제출)** 행정부서 및 학부(과)는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.

**제14조 (평가실시)** ① 기획처에서는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**제15조 (실사)**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부(과)에 실사를 할 수 있다.

**제16조 (평가결과보고)**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부서 및 학부(과)의 확인 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17조 (평가결과 통보 및 공시)** ①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1개월 안에 해당 부서 및 학부(과)에 서면으로 통지한다.

② 자체평가 전담부서는 평가 결과를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.

#### 제 4 장 보 칙

**제18조 (규칙의 개정)** 이 규칙의 개정은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 할 수 있다.

**제19조 (기타)**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자체평가 지표 및 산출식

영역 (지표수)	번호	자체평가지표	산출식	지표 산출 기준
1. 교육 여건	1-1	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	재학생 수 ÷ 전임교원 수	■
	1-2	직원 1인당 학생 수	재학생 수 ÷ 직원 수	■
	1-3	교사확보율	교사확보 현황 ÷ 기준면적	■
	1-4	학생 1인당 도서보유 수	장서보유수 ÷ 재학생수	■
2. 재정 여건	2-1	재정지원 사업 유치 실적	재정지원 사업 유치 금액	■
	2-2	기부금 유치 실적	기부금 유치 금액	■
	2-3	학생1인당 교육비	교육비 ÷ 재학생수	■
	2-4	학생1인당 장학금	장학금 ÷ 재학생수	■
3. 학생 현황	3-1	입시경쟁률	정원내 지원자 수 ÷ 정원내 모집인원×100	■
	3-2	신입생 충원율	정원내 입학자 수 ÷ 정원내 모집인원×100	■
	3-3	재학생 충원율	재학생 수 ÷ 편제정원×100	■
	3-4	중도탈락 학생률	중도탈락 학생 수 ÷ 재적학생 수 × 100	■
4. 교육/ 연구성 과	4-1	강의평가	전체 강의평가 점수 평균	□
	4-2	학과평가	전체 학과평가 점수 평균	□
	4-3	산학 결연 실적	산학협력단 오버헤드 금액	■
	4-4	학술 논문 실적	대내외 논문 발표 건수 ÷ 전임교원 수	■
	4-5	교육역량 강화지표	교육역량강화사업 8개 지표 성적	■
5. 대학 특성화	5-1	OCW 프로그램 현황	OCW 개발 강좌 수	□
	5-2	튜터링 현황	튜터링 강좌 수	□
	5-3	전공동아리 참여 현황	전공동아리 참여 학생 수	□
	5-4	외국인 학생 현황	총 외국인 학생 수	■
	5-5	외국어 강좌 현황	외국어 강좌 수	□
	5-6	해외 교류 참여 현황	해외 교류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	□
	5-7	정보화 투자 비율	정보화관련물품매입비 ÷ (기계기구매입비+집기비품매입비) × 100	□
6. 성과 관리	6-1	재학생만족도	NCSI 만족도 점수	□
	6-2	산업체만족도	산업체 만족도 점수	□

■대학정보공시자료(외부지표), □내부자료